

「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·상속에 관한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3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4월 9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8년 4월 9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주택과장 최근익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창군 택시운송사업의 양도·상속, 차령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(안 제3조)  
사업구역의 도로여건,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 거리와 전국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의 차령기준에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도록 함
-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가능(안 제4조)
-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도록 완화(안 제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,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
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의 차령  
안 제4조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 
안 제5조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·상속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이 개정(15. 6.22)됨에 따라 양도·상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한 자동차의 차령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·상속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·상속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창군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자동차의 차령 등)** 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사업구역의 도로여건,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와 전국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차령기준에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.

**제4조(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)** 군수는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.

**제5조(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·상속)**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

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. 다만,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